## F.C.M 교량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.) 제  $42x^*$ 제 $49x^*$ (추락에 의한 위험방지), 제 $133x^*$ 제 $150x^*$ (크레인, 이동식 크레인), 제 $369x^*$ (교량작업), 제 $328x^*$ 제 $337x^*$ (거푸집동바리 등)의 규정에 의거 콘크리트 구조물 교량공사(F.C.M공법)의 안전한 작업방법 및 추락, 낙하, 붕괴, 감전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단계별 안전사항 및 안전시설에 관한 기술적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바닥으로부터 동바리를 사용하지 않고 교각위 주두부(Pier table)를 시공한 후 교각 양쪽의 교축방향으로 특수한 가설장비(F/T, Form traveller)를 이용해 좌·우로 하중의 균형을 맞추면서 세그먼트(Segment)의 콘크리트 타설, 프리스트레싱 도입을 순차적으로 반복하여 교량 상부 구조를 완성하는 현장타설 F.C.M 공법에 적용한다.



<그림 1> F.C.M 교량시공 전경